

동두천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02. 11. 21 동두천시장이 제출

나. 회부일자 : 2002. 11. 25

다. 상정일자 : 제123회 동두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상정, 제안설명, 질의답변

제6차 본회의 토론

제7차 본회의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2002. 4. 27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및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기금의 운용·관리에 있어 기금을 누계잔액으로 관리하도록 함.

○ 기금운영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

○ 기금운영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 개정조례안은 2002년 4월 27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재해대책기금의 운용관리에 있어서는 기금의 누계잔액으로 관리하되 안정성과 수익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자금을 운영 관리하도록 하고 기금운영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재해및 재난업무와 관련이 있는 과장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기금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